

준비서면

사건 2023가단54507 건물인도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피고 박예식 외 1

위 사건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소외 금촌외국인노동자선교교회(이하, '소외 교회')는 2001. 1. 18.경 설립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교단') 소속 개체교회입니다.

가. 피고 Rosemary Ponce Rapanut(이하, '로즈메리')는 물론 피고 박예식도 소외 금촌외국인노동자선교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파주지방회 소속교회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습니다(로즈메리가 제출한 반박문 제1쪽 하단 기재내용, 피고 박예식이 제출한 답변서 제2쪽 하단 기재내용 및 을가 4호 각 참조).

나. 원고는 교단 소속 재단법인입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7장 제27조 제1항 참조).

(1)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원고에게 편입되어

등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 경제법 제5장 제19조 제1항, 원고 관리사무 규정 제2조 제1항 각 참조).

(2)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303호)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은 원고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7장 제28조 제3항 참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감리교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을 조직요건으로 하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개체교회 각 부서의 부서장(선교부장, 재무부장, 남녀선교회 대표자, 당회 서기, 청년회장 등등) 등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구역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구역회의 권한 중의 하나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무처리권입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3장 제1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4조 제6항 각 참조).

피고 박예식은 원고 이사회의 사전승인도 없는 것은 물론 소외 교회가 속한 구역회의 결의도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303호)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로 원고 소유로 원고가 관리하여야 하는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한 301호, 302호를 무단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갑6호 참조).

2. 소외 김영근 목사는 교단이 소외 교회에 파송한 소외 교회의 담임자입

니다.

가.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하며,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합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8절 제42조 제1항, 제4항 각 참조).

나. 피고 박예식 목사는 2022. 4. 21.에 정년(70세)에 달함에 따라 은퇴한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갑4호 참조).

(1) 은퇴에 따라 피고 박예식은 소외 교회에서 이임하여야 하고 소외 김영근 목사는 교단이 소외 교회에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파송한 소외 교회의 담임자입니다(갑 5호의 1 내지 5 각 참조).

(2) 한편,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이임 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행정법 제8절 제44조 제2항 제10호 참조).

그럼에도 피고 박예식은 교단법이 정한 위 절차를 자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원고는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외 교회의 예배일지, 교회 통장, 교회장부, 교회재산 관리대장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고들은 소외 교회 당회 결의의 적법성, 소외 교회의 동일성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 등에 관한 권한 즉, 원고의 이 사건 명도 청구의 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 제기입니다.

(1)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며 민법상으로는 물론이고 교단법의 제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당연한 권리에 기한 것입니다.

(2)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교단법에 따르면 교단 소속 재단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단 소속 개체교회는 교단 내지 원고의 허락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 달리 원고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천주교와 비슷하게 교단이 중앙집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 등 교회재산에 관한 개체교회의 자율성은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3) 교단법에 따르면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고 하는데 이 당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유사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당회'는 개체교회가 사용하는 교회건물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습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2장 제1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9조 각 참조).

(4) 따라서, 소외 교회 당회 결의의 적법성, 소외 교회의 동일성 등에 관한 피고들의 문제 제기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배척할 수 있는 문제제기 도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제기인 것 입니다.

나. 피고 박예식은 을가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입니다.

(1) 을가 1호의 작성일자는 2006. 9. 25.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금촌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그 후 2019. 1. 10. 위 금촌제일교회가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갑1호 참조).

따라서, 2019. 1. 10. 이전까지는 을가 1호의 기재내용이 설령 그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2019. 1. 10.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원고이므로 을가 1호의 기재내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처분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을가 1호의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로 하며 박예식 목사의 국내 교회 개척 기금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행정조정위원회'가 을가 1호의 작성

자들 중 하나이고 위 행정조정위원회가 피고 박예식에게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 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행정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아니고 더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아니며 원고가 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교단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3) 한편, 위 을가 1호의 제4항의 기재내용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1. 10.까지는 피고 박예식이 이 사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박예식의 이 사건 건물 '활용' 용도는 '국내 교회 개척 기금'으로 제한됩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 박예식은 2017. 1. 9.경 소외 김희경에게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한 301호, 302호를 임대한 후 최근까지 도합 16,921,464원의 월세를 받아 이를 '국내 교회 개척 기금'으로 사용한 것 이 아니고 모두 개인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피고 박예식과 소외 김원택(임차인인 소외 김희경의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참조, '냉장·냉동고○에어컨○육절기○세탁기'는 피고 박예식의 카톡 대화명칭인데 위 대화명칭만으로도 피고 박예식이 중고 가전제품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갑10호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 박예식은 그가 국내 선교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임차인측에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

고마워 비자문제가 해결이 않되어서 출국을 못하고 있는데 긴요하게 사용할게

2022년 8월 4일 목요일

(전략)

내가 비자연장을 1년 8개월 동안 못했더니 벌금과 함께 연장비가 8만 몇천 폐소가 나왔어 이 돈을 이번 주에 지불하면 보름 쯤에는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면 나의 큰 형님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긴요하게 사용하게 될걸세

(4) 소결론

그러므로 을가 1호 제4항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한 피고 박예식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 주장은 이유 없는데 설령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박예식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일부라도 면하려면 피고 박예식은 그가 소외 김희경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최근까지 받은 16,921,464원의 월세를 '국내 교회 개척 기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피고 로즈메리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1) 소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 로즈메리는 소외 교회의 협력선교사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외 교회를 출입하거나 점유할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갑8호 참조).

(2) 피고 로즈메리가 소외 교회의 협력선교사 자격이 상실된 사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통보되었고 통보를 받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피고 로즈메리가 선교목적으로 받은 비자의 기간을 단축하여 그의 비자 기간이 2023. 4. 15.로 만료된 상태인데, 피고 로즈메리는 그 직전인 2023. 4. 12.경 일단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 로즈메리는 그 소유 물품들 다수를 여전히 이 사건 건물 내에 놓아두고 그 물품들을 놓아 둔 장소를 자물쇠로 시정해 놓아 타의 출입을 막으면서 점유를 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점유를 계속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4. 결 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해놓고는 소외 김영근 목사를 비롯한 소외 교회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부득이 김영근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은 법원의 명도 판결 확정시까지 다른 곳에 마련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외 김영근 목사는 최근에도 한 차례 이 사건 건물의 전기, 가스안전 등이 우려되어 전기, 가스 등 시설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교체하고자 2023. 3. 10.경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구한 후 공사업자를 데리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들의 비협조로 그냥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을나 5호 참조).

조속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참고자료

- ## 1.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발췌 사본

입증방법

- ## 1. 갑 제10호증 카톡대화내용

2023. 4.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용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교리와 장정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교육·교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와 심사위원회·기소한 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
를 둔다.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
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결서
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
소·무효 확인, 으로 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
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을 법률로 정
한다.

[92] 제26조(재판의 족립 및 종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신설>

제 7 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개정>

[93] 제27조(소속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개정>

-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자재단 <개정>
-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개정>
-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개정>
-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개정>
-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개정>
-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신설>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설>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신설>

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신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신설>

⑪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신설>

⑫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신설>

[94] 제28조(재산관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27조(소속법인) 제
6, 7, 8, 9, 11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①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
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자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신설>

② 제27조의 소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
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신설>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자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
한감리회 유자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④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
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유자재단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종회 또는
종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
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사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43】 제19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단, 미주특별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유지재단 정관 및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544】 제20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①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본부 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③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운영에 관하여 재단이사회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각 기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 한다.

제 6 장 교역자운급사업

【545】 제21조(교역자은급사업) 감리회 본부에서 교역자의 은퇴, 별세, 또는 복회로 이하 지내 시세 징수는 그 사업 그림을 무정으로 교역

교회학교장, 난설교
회장, 당회 서기

제 3 장 구역회

을 각 항과 같다.

제 1 절 구역회

【348】 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349】 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 이 구성된다.

【350】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성기구역회와 임시 구역회로 구분한다. <개정>

- (1)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 (2) 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
- (3)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 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351】 제31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 (2) 장로, 권사, 속장
- (3)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개정>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담회 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352】 제32조(구역회 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개정>

② 감리사 유고시, 또는 제3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개정>

③ 의회법 제34조 제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귀한 할 수 없다. <신설>

【353】 제33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담회 서기 1명을 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한다.

【35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를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④ 구역회는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현금의 수지된 것을 사무한다.

⑤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교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지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담임회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일명하도록 한다.

⑤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⑦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 (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⑨ 구역회는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355】 제35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1. 목사

2. 전도사

3. 교육사

4. 심방전도사

5. 장로

6. 권사

7. 속장

8. 선교부장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249

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5. 4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10201호)

【602】 제1조(시행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6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관에 명시한 재산처리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정관 제3조(목적), 제15조(부의사항) 제1항 제5호, 제19조(재산의 관리) 제2항)

【604】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서리담임자가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전경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미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개정)*

⑦ 준회원 자격에 해당되는 이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150] 제41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로 인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오장의 주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151] 제42조(담임자의 파송)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자가 파송한다.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개정)*

③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 자로 파송할 수 없다.

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 한다. 다만,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 *(신설)*

[152] 제43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153] 제44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한다. 다만, 목사로 인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빌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여 기독교사업에 헌신 몽사케 한다.

② 행정 책임자: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조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에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회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디스코드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임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92 제3편 조직과 행정법

1. 교회에 속한 교인이 나쁜 교회로 이명 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대, 임원회비, 봄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서부를 기성하여 보관신다.
6. 당회, 구역회, 시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시방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 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10. 담임자 이입시 개체교회의 시무와 행정 새생 능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신설>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9 절 부담임자

【154】 제45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개정>

- ①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신설>
- ② 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우

【155】 자

아니.

【156】 서

(1) 담임

회·

(2) 담임

경우

자·노

【157】 제

① 담임

중에

② 입교

③ 교회

있어

【158】 제

행을 위

① 선교·

② 교육·

③ 사회·

④ 예배·

⑤ 문화·

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해 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26】 제6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 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327】 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당회라 한다.

【328】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29】 제9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 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330】 제10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33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회원 3분이 1 이상의 소집

156 제4편 의회법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급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

【338】 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회원의 수로 한다.

【33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 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 ⑥ 당회는 5세대부터 0세대 범위 인에서 녹회를 소식하고 임원에서 속상 1명을 선출한다.
-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총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 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떠나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에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친다.

장정개정(편찬)위원회 조직

위 원 장 김충식 목사
부위원장 신은영 장로
서 기 유재성 장로
부 서 기 박재홍 목사
위 원 권인태 장로, 김규세 목사, 김명종 장로, 김양묵 장로,
김진두 목사, 김찬호 목사, 문영길 목사, 박경양 목사,
박인환 목사, 석준복 목사, 양영석 장로, 염정식 장로,
원기배 목사, 원익희 장로, 이기복 목사, 이승만 장로,
이영훈 목사, 이윤석 장로, 임도순 장로, 임승호 목사,
조경희 장로, 주영진 장로, 지기석 장로, 채재관 목사,
(가나다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6년)

초판 1쇄 | 2016년 3월 28일

펴 낸 이 | 전용재

편 집 | 장정개정(편찬)위원회

펴 낸 곳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등록번호 | 제2-1607호(1993년 9월 4일)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대표전화 | 02-399-2008~9 팩 스 | 02-399-2085

홈페이지 | <http://www.kmc.or.kr>

<http://www.kmcmai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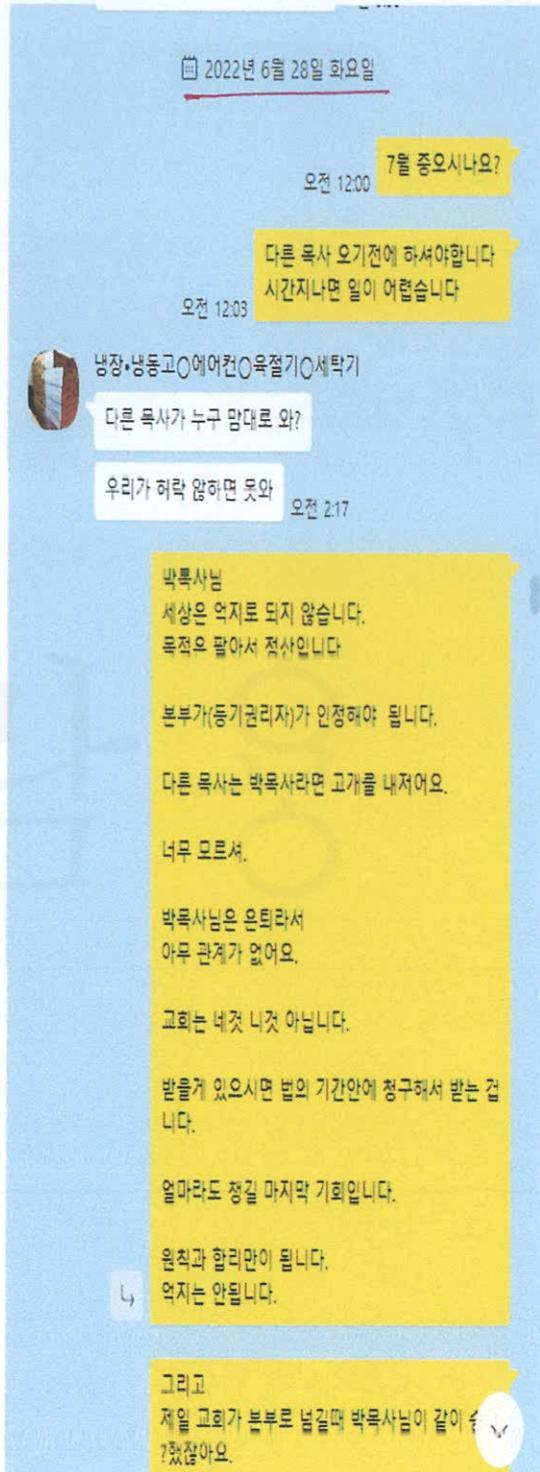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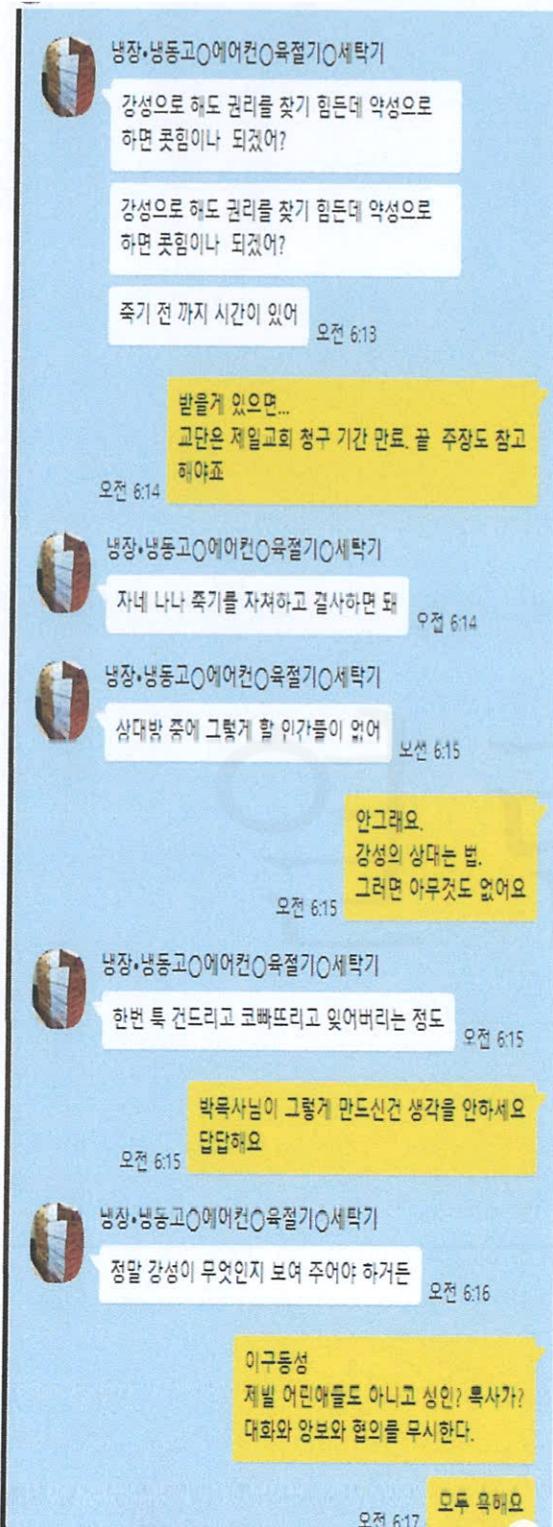
인 쇄 | 디자인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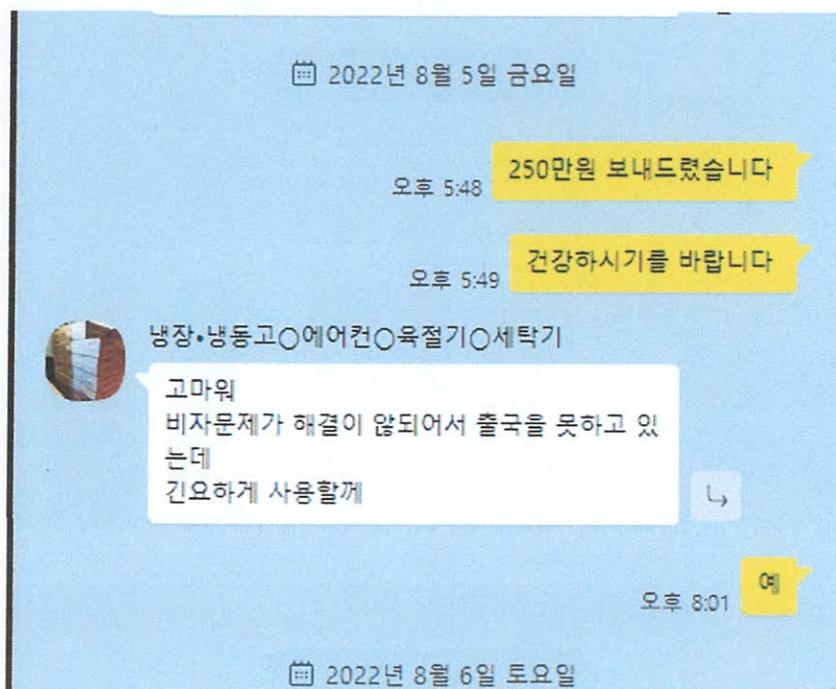
값 15,000원

ISBN 978-89-8430-704-9 13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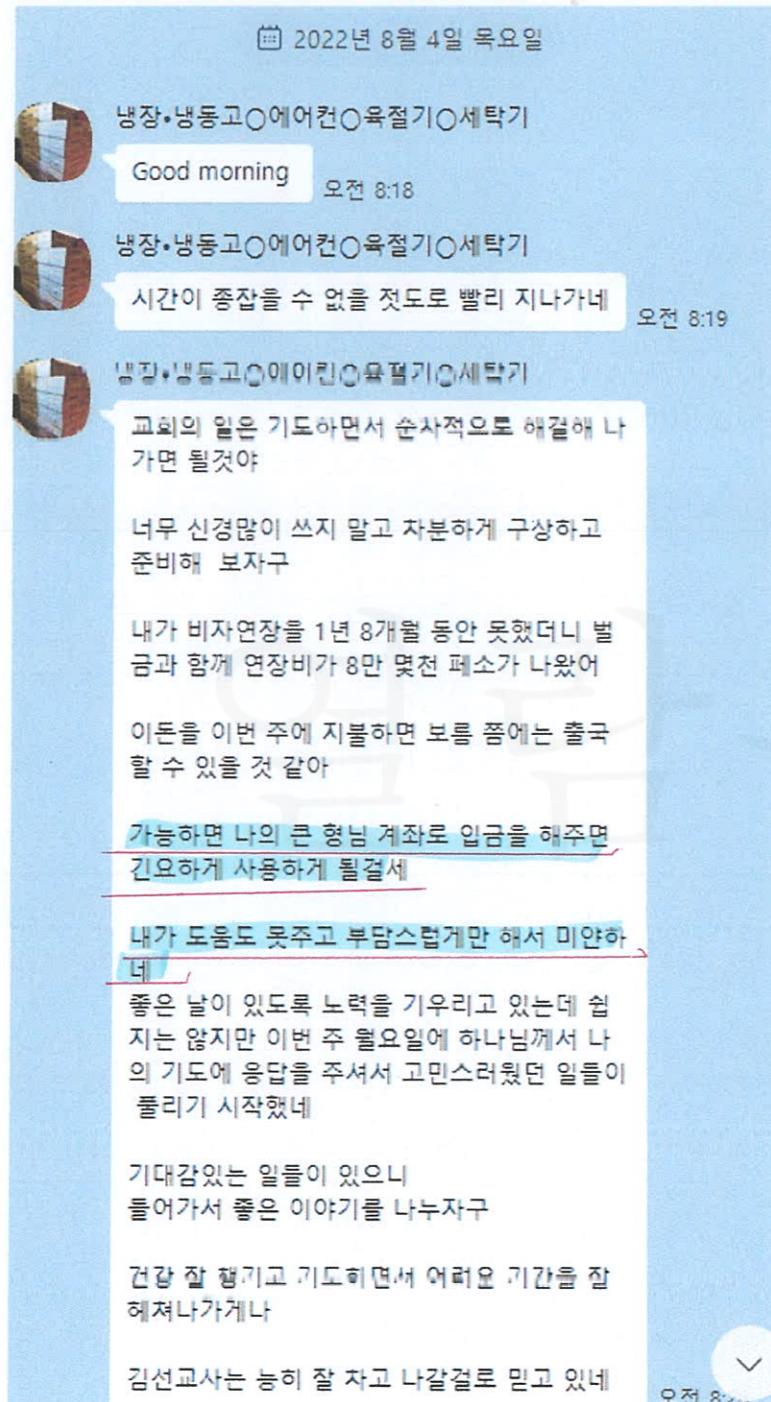


갑 제10호증





갑 제10호증



그런데 옛날 생각에 저와 싸우시니
저도 등을 돌리게 하시니...

그동안.

저도

한뼘 내려놓고 지난시간과 미래시간을 생각해보
고.

그래
우리는 운명이야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보듬자.

이런 생각으로 대화를 시도 해도

답답하게 혼자 강성 주장하셔서

맥이 끊어지죠

오전 5:41

냉장·냉동고○에어컨○육젓기○세탁기

교단 원로 감독들과 나의 친구 감독들 그리고
후배 감독들을 상의 하며 길을 모색하는 중일
세

이보다 더 좋은 길이 김선교사님께 있다면 모
두 맡기겠네

오전 5:43

냉장·냉동고○에어컨○육젓기○세탁기

우리 평생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

오전 4:21

ㅎ ㅎ

오전 4:21

냉장·냉동고○에어컨○육젓기○세탁기

해결이 않되면 그냥 사용하는거야
누가 어떻게 하지도 할수도 없어
실상이 그래

오전 4:22

갑 히고 증